

제265회 임시회
광진구의회

**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조정위원회
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**



2023. 10. 24.

기획행정위원회

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2116
----------	------

2023. 10. 24.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23. 10. 10.
- 나. 회부일자 : 2023. 10. 19.
- 다. 상정일자 : 2023. 10. 23.

2. 안건설명

- 가. 제안설명자 : 광진구청장
- 나. 제출사유

민원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제 구성 및 운영을 비상설로 운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일부 개정(안 제3조)
-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 삭제(안 제5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
 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 -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 - 기 타
- (1) 입법예고(2023. 9. 13. ~ 10. 4.) 결과 : 접수된 의견 없음
- (2)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평가,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 이경수)

- 의안번호 제2116호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 2023년 10월 10일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여 2023년 10월 19일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으로,
- 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제 구성 및 운영을 비상설로 운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제출되었음.
-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 - 안 제3조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중 위원의 수를 기존 15명 이내에서 5명 이상 11명 이내로 변경하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·위촉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 3년을 삭제함.

1. 당연직 위원: 민원사항 소관 국장 및 관계부서 국장
2. 위촉직 위원 :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
 - 가. 외부 법률전문가
 - 나. 소관 분야별 전문가
 - 다. 심의안건 해당 지역의 구의원 2명
 - 라. 그 밖에 지역사회, 학계, 종교계 등 덕망 있고 독립적인 사람

-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 비상설로 인한 위원 해촉 관련 규정을 삭제함.

○ 종합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연간 개최실적이 1회에 불과한 민원조정위원회를 상설위원회에서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,
- 광진구 민원조정위원회는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부서 지정, 장기·반복 미해결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,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등에 대하여 운영 중인 위원회로 연간개최 실적이 적고 장기적으로 상정될 안건이 적은바,
- 이와 같은 상설운영의 필요성이 적은 민원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이 없는 타당한 안건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회의록 참조

5. 토론

- 회의록 참조

6. 심사결과

-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수정가결(2023.10.23) 【붙임 1】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

【붙임 1】

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3조 제3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다. 심의 안전 해당 지역의 구의원 2명을 광진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
으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구성 등) ① (생략)</p> <p>③ <u>위촉직</u>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</p> <p>1. <u>외부 법률전문가를 포함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</u></p> <p>2. <u>심의안전 해당지역의 구의원 2명</u></p>	<p>제3조(구성 등) ① (생략)</p> <p>③ <u>위원회</u> ----- -----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</p> <p>1. <u>당연직 위원 : 민원 사항 소관 국장 및 관계 부서 국장</u></p> <p>2. <u>위촉직 위원 :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</u>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가. <u>외부 법률전문가</u>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나. <u>소관 분야별 전문가</u>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다. <u>광진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</u>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라. <u>그 밖에 지역사회, 학계, 종교계 등 덕망 있고 중립적인 사람</u></p>